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

1998. 1. 17 제정
2014. 10. 27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지도력개발센터(이하 “여성지도력개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5.2.11)

제2조(직무) 여성지도력개발센터는 여성지도자들에게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지도력을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의 운영
2.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기타 여성지도력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) ① 여성지도력개발센터에 소장을 두되,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정책과학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. (개정 2005.2.11)

② 소장은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연구원 등) ① 여성지도력개발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 또는 직원은 소장이 임면하되, 연구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여성지도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3.2.25.)

② 위원회는 정책과학대학원장, 소장, 대외협력처장, 리더십개발원장 및 정책과학대학원 부원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정책과학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정책과학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정책과학대학원장이 된다. (개정 2014.10.27.)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도 이와 같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로 한다. (개정 2013.2.25.)

④ 정책과학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내부 규정으로 한다. (신설 2013.2.25.)

제6조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사업계획 및 예산서) 소장은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소장은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경비는 여성지도력개발센터 자체의 수입, 본교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.

제11조 (운영세칙) 여성지도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8. 1. 17 제정)

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3. 2 개정)

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2. 11 개정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2. 25 개정)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0. 2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